

## 개정 사학법과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추구

한윤식\* · 진현준\*\*

### 논문초록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를 개방형 이사제를 통하여 법인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는 대학 건학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이사회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은 그 설립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또는 역세속화의 과정의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개정 사학법의 대안으로서 법인과 학교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이사회가 학교장을 선임하여 학교장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게 하고, 또 대학평의회를 설치하여 대학의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에는 학사행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다만 대학의 집행부와 대학평의회 사이의 충돌을 중재하는 역할과 총장의 업무수행을 평가 및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이사회만 설립 이념의 추구 의지가 분명하다면, 적절한 총장의 임명과 전권 위임의 구조를 통하여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나아가서 역세속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개정 사학법, 기독교대학, 정체성, 세속화, 역세속화,  
신앙과 학문의 통합

---

\*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 제1 저자

\*\* IG전자 한국마케팅

I. 문제제기
II. 기독교대학의 세속화와 역세속화
III. 한국의 기독교대학과 개정 사학법
IV. 결론

## I.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학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민 대다수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해 왔다. 이러한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단순히 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근원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학비리의 발생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가 현재의 개정 사학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해 말 개정되기 이전의 사학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학교의 경영뿐만 아니라 교무 및 학사의 운영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가 학교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즉 이사장이 이사의 선임권을 갖고 이사회가 학교장의 임면권 및 교원의 임면권을 가지며 학교장이 다시 하위보직의 임면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사학의 구조가 이사장이나 설립자 1인이 학교의 교무운영 및 모든 행정까지 지배하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정 사학법은 학교의 구성원 및 관계자로 구성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대학평의회<sup>1)</sup>의 의무적 설치, 대학평의회 의 개방형 이사 및 감사의 추천권, 학교장의 임기 제한 등을 도입하여 이사회 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구성원의 의사

---

1) 본고에서는 사립학교중 대학교의 부분에 논의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중고등학교의 사정과 대학교의 사정은 상당히 다르며 필자들은 중고등학교의 사정을 다룰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이사회에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장의 독주는 방지하고 학교의 운영은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학의 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법인경영과 학교운영을 분리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법과 두 번째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법인이사회의 권한 행사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양자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동시에 구현할 수도 있다(임재홍, 2002).

먼저 법인경영과 학교운영을 분리하는 방법은 법인이사회가 학교장의 임면권을 가지며 학교장에게 학교의 경영을 위임함으로써 학교장은 교원의 임면권을 갖는 등 자율성을 갖고 학사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학교장은 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경영을 책임지게 될 것이며 법인 측은 학교장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계속 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인 측은 학교의 교원임용 등 교무 및 학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사학비리 척결에 상당한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법인과 학교를 분리하는 이 방법의 장점은 설립이념을 구현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설립이념에 부합한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학교의 장을 발탁하고 그 전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사회에서는 학교의 학사행정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경영만을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정관으로 교수평의회 또는 대학평의회를 규정하여 교수평의회 또는 대학평의회로 하여금 학교장의 독재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법인의 이사회는 학교장의 교육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설립이념을 올바르게 구현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면, 설립목적으로 대표되는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동시에 설립자 또는 이사장 1인에 의한 학교의 운영을 방지할 수 있어 교육의 공공성도 공히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 사학법은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를 개방형 이사제를 통하여 이사회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채택된 배경에는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이 공립학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가정이 국민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은 공립학교의 그것과 달랐지만, 현재는 종교적인 이념을 건학 이념으로 하는 사립학교의 경우도 그 설립이념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거나 또한 추구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이 공립학교와 비교할 때 별로 다를 바 없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들의 교직원 채용과 관련한 비리, 부정입학, 교비횡령 등의 만연한 비리는 건학 이념의 퇴색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은 더욱 강조되고 사립학교의 특수성, 즉 설립이념의 추구는 거의 무시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도입된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위원회의 도입은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또 학교장의 임기보장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의 모체인 사적인 법인 이사회의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개별 사립학교의 특수성, 즉 사학의 건학 이념을 추구할 권리가 무시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결과적으로 사립학교의 운영구조가 공립학교의 그것과 유사하게 되고, 실제의 운영도 유사하게 되어 갈 것이므로 결국은 사학의 존재이유, 그 자체가 부정되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들어 사립중고등학교의 법인 측은 개정 사학법에 반대한다. 그러나 찬성하는 입장은 현재의 사립중고등학교의 운영이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주장한다.<sup>1)</sup> 이것에 대하여 사학법인은 정부가 학생의 선

1) 2005년도의 사립중학교의 정부재정지원 의존률은 36.5%, 사립고등학교는 63.5%, 그리고 4년제 사립대학은 16.3%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개인이 선택한 특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또한 지원하

발권, 등록금을 책정할 권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사학법인들의 주장에 국민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배경에는 그 동안의 사학기관들 사이에서 저질러온 비리가 너무 크고 만연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립학교의 특수성, 즉 건학 이념에 기초한 교육의 존재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학 이념에 기초한 교육이 일반인으로부터 무시당하게 된 것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다. 왜곡된 대학 입시제도에 의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전락해 버렸고, 따라서 일반인들은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입시를 대비하여 표준화되어야 하고 공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종교계통의 사립학교에서 제공하는 종교에 기초한 교육 또는 종교교육은 불필요한 것이며, 교육의 핵심을 차지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최소화 되고 주변화 되어야 마땅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사학법은 일반 사립학교, 즉 건학 이념이 공립학교의 교육이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사립학교의 경우와 건학 이념이 명목상으로만 공립학교와 구별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건학이념의 구현과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교육이념과 뚜렷이 구별되는 건학 이념을 가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념을 좇아 교육을 시행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문제는 종교계통의 사립학교 중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에서, 특별히 기독교에 기초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일수록 더욱 심각할 수 있다.

---

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 자체가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간섭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2) 이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가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 사학이 자신들의 이념을 좇아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 사학이 자신의 이념을 좇아서 자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줄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은 학교이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교육을 통하여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적 교육은 기독교적 가르침에 기반 한 교육이므로 기독교와 학문 또는 교육이 서로 독립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기독교적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의 이해를 필요로 하고 이는 학교행정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sup>3)</sup> 기독교학교가 이러한 기독교적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임하는 자세 및 교육의 철학 및 방법은 교육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며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교육을 시행하는 일반학교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특수성이 존중되어야 설립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철학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이를 강화하는 제도를 강제할 때에 기독교적 교육의 특수성은 무시되어 버린다.<sup>4)</sup>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 사학법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그 존재의의와 설립목적은 추구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립학교 중 기독교적 학문과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기독교대학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기독교적 설립이념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대학들, 즉 기독교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대학들에게 개정 사학법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미리 예측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3) 한국적 현실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독교적 학문과 교육에 대한 인식이 국민 일반에게는 물론이고 기독교계 내에도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4) 기독교학교의 교사들도 대부분 종교와 교육은 서로 무관하다는 이원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독교학교들은 독자적인 기준에 의한 학생의 선발권이 없으므로 기독교적인 학문과 교육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을 부득이하게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게 될 때 기독교학교의 기독교적 교육은 자연스레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개정 사학법을 통해 또 한번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면, 기독교학교들은 그 설립목적은 추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 II. 기독교대학의 세속화와 역세속화

기독교 계통의 사립 대학교들의 상황도 전술한 사립중고등학교의 상황들과 거의 유사하다. 한국의 대학 중 기독교를 설립이념으로 표방하는 대학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한다(shin, 2002). 기독교 교단에 속해 있는 사립대학교의 수는 34개로서 전체 대학의 약 17%를 차지한다. 이들 한국의 기독교 대학은 대략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미션스쿨로 시작된 대학과 신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확장되어 형성된 대학, 그리고 기독교적 정신을 교육이념으로 하여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신학교를 기반으로 출발한 소수의 대학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비교적 작은 규모를 유지하는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대부분 교목 또는 교목실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일반 대학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더하여 학생들에게 채플과 한 두 과목의 성경 또는 신학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점 등이 다를 뿐, 뚜렷이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들을 거의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학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학생들 때문에 이러한 의무사항마저도 더욱 희미해져 가고 있다. 법인의 정관이나 학교의 훈시 등에 형식적으로 들어 있는 건학 이념과 교수 채용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신앙 점검을 제외하고는 여타 국공립대학교와 대비하여 뚜렷이 내세울 기독교사학으로서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문제로 삼지 않는다면, 개정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같은 요소들이 기독교사학들의 건학 이념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비판(김용관, 2006)은 그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사학의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개정 사학법은 대다수의 국민과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환영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기독교 사학의 현실은 스스로가 사학의 설립이념을 추구할 권

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대학과 구분 짓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대학에 대하여 북미의 성공한 기독교대학인 캘빈대학교의 브랫 교수(Bratt and Wells, 1997)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채플이나 성경과목의 필수화, 봉사활동의 장려, 인성교육 또는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 기독교적 덕성의 강조, 기독교적 신념의 세련된 표현 또는 학문과는 상관이 없는 경건의 강조만으로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수업이 곧 채플이 되고, 교수의 연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고, 모든 교육과정의 기초부터 교과목의 마무리까지 기독교정신이 스며들고, 그리고 신앙 원칙이 전공교육을 인도하게 되어야만 진정한 기독교대학교육이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에서는 기독교대학을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학문의 제 분야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임을 인식하여 모든 학문을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은 대학을 기독교대학이라고 정의하면 실제로 한국에서는 온전히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은 이상적인 기독교학교와 완전히 세속적인 학교 사이를 연결하는 선 위에서 정도의 차이만 보이면서 세속적인 대학교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기독교대학을 단순히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미션스쿨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학들<sup>6)</sup> 또는 신앙과 교육에 대한 이원론적인 관점을 갖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인 대학들은 그 지적인 성분, 즉 교육의 내용이 완전히 세속화되어도

---

5) 출처: [www.view.edu](http://www.view.edu), "기독교대학이란?"

6) 기독교학교를 단순히 미션스쿨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들은 선교와 전도를 기독교학교의 설립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독교적 교육이라는 교육과 학문 그 자체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적 분위기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기독교적 관례를 잘 따른다면 대학의 가장 중요한 지적 작업인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도 기독교적 색채를 덧입힐 수 있다. 채플과 기도회, 선교활동과 봉사활동, QT, 기숙사의 공동체 생활 등은 대단히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와 활동에 부합하는 교수들을 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대학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지적 작업인 학문에 신앙을 도입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신앙의 영역과 학문 또는 교육의 영역은 별개로 존재하게 된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됨으로써 중국에는 기독교대학으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북미주의 교회들이 설립한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은 세속화되었다(BurtChaell, 1998).

한국의 기독교대학들도 역시 대부분 세속화되었거나 처음부터 세속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이러한 세속화 또는 정체성의 상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필요, 이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대학의 대형화, 학문적 수월성의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교수의 임용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근간에는 학문은 신앙과 무관하다는 이원론적 신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의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위협 요소들을 조용훈(2003)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구성원의 대다수가 신앙을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는 신앙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상실과 더불어 입학하는 기독교인 신입생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셋째, 채플로 대표되는 기독교적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대학구성원 사이에 확산되어 가고 있다. 넷째, 대학 구성원들의 선교적 열정과 헌신이 약화되고 있다.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기독교대학들의 구성원들은 개정 사학법이 기독교대

7) 여기서 세속화라 함은 기독교 신앙이 그 대학의 주요활동인 연구, 교육, 봉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상태를 의미한다. 즉 대학생활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주변화를 뜻한다.

학의 교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학교를 발전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개정 사학법을 적극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이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교육의 수행은 물론이고 미션스쿨로서의 기능도 약화시킴으로써 기독교대학으로서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하며, 나아가서 전도 대상자인 학생들의 학교의 기독교적인 정책에 대한 반발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학대학을 기반으로 시작한 기독교대학들 중의 일부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는 기독교 대학 등 기독교적 정체성이 비교적 명확한 대학들에서는 채플이나 기독교 관련 교과목의 의무이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독교인 신입생의 비율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신앙에 기초하여 학문 및 교육을 주도해야 할 교수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리 희망적이지 아니하다. 전도를 사명으로 하는 기독교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적 학문과 교육을 추구하는 교수들이 그리 많지 아니하다는 것은 동일한 문제이다. 학생들도 이러한 관점, 기독교적 학문과 교육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건학 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점인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대학의 모습을 좇지 못하고 세속화의 폭풍속에서 방황하는 배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대학에게 필요한 것은 역세속화의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작업의 핵심에는 대학의 주요 업무인 학문연구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이 작업은 주로 대학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교수에 의하여 수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독교대학이 존재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는 기독교적 학문과 교육을 추구하는 교수 그룹의 형성 및 개발이 그

8) 이러한 작업을 우리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고 부르며 이에 기초한 학문 및 교육의 모델을 통합적 모델이라고 부른다.

요체이며 기독교대학들의 당면과제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기독교적 학문의 추구가 기독교대학들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소수의 기독교 대학을 중심으로 기독교적 정체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sup>9)</sup>

이러한 역세속화를 추진하는, 즉 기독교적 정체성을 회복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대학들에게 개정 사학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초교파적 기독교대학인 휘튼대학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휘튼대학은 140년 전 출발 당시에는 뚜렷한 웨슬리언 전통의 대학이었고 20세기 초반에는 미국 근본주의의 상징이었던 대학이었다. 교육 철학의 면에서 휘튼대학은 두 영역(two sphere) 모델 또는 가치부가형(add-on) 모델을 취함으로써 교육내용은 세속적인 교양교육대학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1970년경부터 화란개혁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아더 홉즈 교수를 초청하여 개혁주의적 교육모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지금은 휘튼 형 통합모델이 휘튼대학의 교수들이 취하는 주류 모델이 되었다.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북미주의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도 휘튼대학처럼 칼빈대학의 개혁주의적 통합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Hughes, 1997). 이러한 휘튼의 근본적인 학풍의 변화에 대하여 구성원들 특별히 교수들의 반발이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아더 홉즈 교수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 줄어 있었던 것은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Benne, 2001). 이러한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은 그를 채용하고 전적인 권한

9) 고신대학교, 백석대학교, 한동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기독교학분연구소,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등의 기독교학술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기독교대학연합 교수개발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신흥 기독교대학인 한동대학교의 출현으로 기존의 기독교대학들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

을 위임하는 재단법인 이사회의 결정과 지원에 기인하였다.

휘튼의 사례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함으로써 건학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강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기독교대학의 발전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적 설립이념 추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sup>10)</sup>

### III. 한국의 기독교대학과 개정 사학법

한국적 상황에서도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장을 위시한 집행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이며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기독교적 학문과 교육 추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학교 전체가 그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설사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세속화의 경향이 먼저 지배적인 풍토가 되어 버릴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 사학법이 기독교대학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여본다.

현재의 개정 사학법의 내용 중 기독교대학의 기독교적 정체성 추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개방형 이사제로 전체 이사수의 1/4이상을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둘째는 교수, 학생, 직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대학평의원회의 의무적 설치 조항이다. 마지

---

10) 대학의 주요 구성원들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캘빈대학의 경우처럼,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도 뚜렷이 기독교적인 대학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캘빈대학의 경우도 최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CEO형 총장제를 도입하고 그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막으로 셋째는 대학 총장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미 기술하였듯이 만일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기독교적 학문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기독교적 정체성의 추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개정 사학법은 그다지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건학 이념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개방형 이사들이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이 되고 이들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학교는 더욱 더 일관성 있게 건학 이념을 추구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됨과 동시에 개정 사학법이 의도하는 대로 법인의 운영은 더욱 투명하게 되어 학내에 존재가능한 사학비리를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학교들은 보다 순수하고 정결하게 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대학의 대부분의 교수들은 기독교에 기초한 학문 활동을 전혀 훈련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대다수 교수들은 기독교적 학문을 연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기초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은 그리 쉽지 않다. 교수들은 많은 새로운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하며 그 성과 또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독교적 학문 활동은 현실적으로 기존의 일반 학계에서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일지라도 기독교대학들은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기독교적 학문 연구와 교육을 해당 교수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의 교수, 특히 신앙과 학문은 서로 별개의 영역에 속한다는 믿음을 가진 교수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거부감을 갖게 할 수 있다.

더구나 기독교대학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 그 운영에서조차 세속 대학과 다를 바 없는 현실에서 세속적 성향을 띤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천된 개방형 이사가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기독교대학은 본래의 설립목적에 반하여 급속한 세속화의 길로 접어들어 역세속화가 진행될 가능성조차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하다. 따라서 개정 사학법을

통해 개방형이사가 들어오더라도, 학교 경영자가 정말 학교를 깨끗하게 운영하고 참된 기독교 정신으로 일한다면, 학교를 비방하는 분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독교 내부의 개정 사학법 찬성론<sup>11)</sup>은 지나친 감상주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사실상 이사장의 이사선임권에 일부 제한을 가하기 위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이사 정수는 현행대로 7인 이상)을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비록 시행령(안)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또 개방형 이사의 숫자가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다고는 하나,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를 일정 수 이상 이사회에 참여시켜 이사회 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 이상 그들의 존재는 이사회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결국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의 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현재 기독교대학의 대다수의 구성원이 기독교적 학문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을 구현하여야만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건학 이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 대학의 대부분의 기독교인 교수들은 학문과 신앙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비록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이라 할지라도 실제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여 기독교적 학문과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교수는 극히 드물다. 대체적으로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연구업적을 내는 것만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신의 개별 학문분야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대한 대학의 요구는 더 큰

---

11) 3,000여 기독교교사와 14개 기독교교사단체들로 이루어진 좋은 교사운동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많은 국민들과 함께 찬성한다는 성명서 "한국교회회는 사학법 개정을 수용해야 합니다."를 2005년 12월 20일 발표하였으며, 일부 기독교사학 내에서도 부패가 있었으므로 이를 견제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이었던 휘튼대학의 경우에도 주요 구성원들인 교수들의 반발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음으로 개정 사학법은 대학 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대학평의위원회의 기능,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 정하도록 했다(개정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또한 대학평의위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의 대표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문, 지역인사 등의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그룹이 그 정수의 1/2 이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평의위원회는 대학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서 건전한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운영주체는 교수이고, 다른 구성원보다는 교수들이 비교적 기독교적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을 것이므로 교수회의 대표가 대학평의위원회의 대다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구성원이 특정 그룹이 과반수가 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뒤집어 보게 되면 대학의 핵심 업무인 학문과 교육의 일에 이차적인 입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과반수를 점하게 된다. 현재의 기독교대학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기독교적 학문을 통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강화에 인식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피교육자인 학생들은 기독교적인 교육 또는 이에 따르는 의무적 부가 사항에 대하여 저항하는 성향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시행령이 제안하는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은 기독교적 정체성의 추구에 관한 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4년의 임기로 중임까지 허용하는 총장의 임기 제한은 기독교대학의 역사속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상당히 제약적인 요소로 될 수 있다. 유능하고 적합한 총장일 경우에는 8

년이라는 기간보다 장기적인 기간 동안 학사의 운영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적 학문 분위기의 조성은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기독교대학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sup>12)</sup> 그리고 발전하는 미국의 사립대학들의 총장들의 보임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학교장의 임기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사학법인의 경영권 침해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IV. 결론

현재의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를 개방형 이사제를 통하여 법인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학 운영의 공공성은 어느 정도 담보하겠지만 사학의 건학 이념을 충실히 추구하는 대학, 특별히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 및 강화하려는 건전한 대학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대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며 기독교적 정체성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의 권한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개정안이 성립하게 된 주요한 배경은 교육의 공공성만 강조되고, 사립학교의 특수성, 특별히 기독교계통 학교의 특수성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학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인 법인과 학교를 분리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즉 건학 이념을 구현할 책임을 맡은 이사회가 학교장을 선임하여 그 권한을 학교장에게 전적

12) 미국의 캘빈대학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학교의 방침으로 채택한 이후 약 100여년의 세월을 통해 현재와 같은 확고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으로 위임하고, 학교장의 책임 하에 교직원을 임용하여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교수평의회 또는 교수 그룹이 주도하는 대학평의회를 설치하여 대학의 집행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학교의 학사행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다만 대학의 집행부와 대학평의회 사이의 충돌을 중재하는 역할과 총장의 업무수행을 평가 및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 이사장은 이사회에 총장 임면권을 통하여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사장의 총장을 통한 간접적 지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회 또는 교수평의회에는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장의 책임 있는 학교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기제를 도입할 필요는 있으나 연임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대안적 구조로 갈 경우에 이사장 1인에 의한 전횡이나 비리의 발생 가능성은 이사장이 직접 학교의 운영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보다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반면,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총장의 임면권을 통하여 설립이념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대학은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학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면서 전형적인 사학의 비리는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기독교대학이 채택한다면 전 구성원의 기독교적인 교육과 학문의 추구에 대한 동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사회만 설립 이념의 추구 의지가 분명하다면, 적절한 총장의 임명과 전권 위임의 구조를 통하여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나아가서 역세속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sup>13)</sup>

13) 만일 어떤 사립학교의 법인 이사회가 그 학교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없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법과 제도, 지금과 같은 개방형 이사제를 만든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결국 제정하게 된다면 법인으로부터 학교를 탈취하여 공영화를 시키는 형국이 되어 사립학교를 국

## 참 고 문 헌

- 김용관 (2006), "사립학교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시안 공청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 임재홍 (2002),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교육개혁의 방향," 민주법학, 21, 13-48.
- 임재홍 (2006),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대학 평의원회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시안 공청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 조용훈 (2003),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한 연구," 『통합연구』, 16(2), 193-224.
- 한윤식 (2003), "기독교대학으로서의 한동대학교, 그 가능성과 구현방안," 『통합연구』, 16(2), 225-251.
- 좋은교사운동 (2005), "한국교회는 사학법 개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이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
- 사교련 (2006),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과제, 제5회 사교련 정책 포럼 자료, 전국사립대학교교수연합회
- 사교련 (2006), 건전사학 육성방안, 제6회 사교련 정책 포럼 자료, 전국사립대학교교수연합회
- Benne, R (2001), *Quality with Soul: How Six Premier Colleges and Universities Keep Faith with Their Religious Traditions*, Grand Rapids: Eerdmans.
- Bratt, J. D. and Wells, R. A.(1997), "Piety and Progress: A History of Calvin College,"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rvival and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Edited by Hughes R. T. and Adrian, W. B., Grand Rapids: Eerdmans.
- BurtChaell, J. T. (1998), *The Dying of the Lights: The Disengagem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their Christian Churches*, Grand Rapids: Eerdmans.
- Hughes, R. T. (1997), "Introduction,"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rvival and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Edited by Hughes R. T. and Adrian, W.

---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되고 말 것이다.

B., Grand Rapids: Eerdmans.

Shin, K. W. (2002). Where about and Whereto: Korean Christian Higher Education. IAPCH: Leadership Conference for the Asia/Oceania Region.

## Abstract

# Private Institution Law Amendment and Identity of Christian College

Youn Sik Han\* and Hyun Joon Jin\*

The purpose of recent amendment to the private institution law is in strengthening the public interest of education. The amendment focuses on incorporating each constituent's opinion of school operations through open board system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ransparent operation of private institutions. It can limit the role of board of trustees in nature, however, as the board tries to carry its duty to embody the purpose of educ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As the result, Christian private institutions cannot avoid facing harsh challenges as they pursue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continue its struggle against secularization of the school.

This paper suggests a model of separating the board from the school administration as a countermeasure to the amendment. It suggests that the board appoint president of college so that the president can take the full responsibility of administration. It also proposes that the board organize the university council so that the council

---

\* Professor, Handong University

\*\* LG Electronics

can hold the administration in check. The board is suggested not to be involved in academic administration at all, but to take on the role of evaluating and supervising president's capability as well as mediating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council. Under such a structure, if the will of the board towards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 philosophy is strong enough, it is possible to further strengthen its identity as Christian school and to continue to promote the inversed secularization through the appointment of rightful president and delegation of the power.

**Key Words:** amendment to the private institution law, Christian college, identity, secularization, inversed secularization,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